■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[별표 2] <개정 2023. 12. 26.>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

관세율표				세율	
번	호	품명	규격 등	(%)	한계수량
호 0408	소호	새의 알(껍질이 붙지 않은 것)		(/0)	
0400		과 알의 노른자위(신선한 것,			
		건조한 것, 물에 삶았거나 찐			
		것, 성형한 것, 냉동한 것이나			
		그 밖의 보존처리를 한 것으로			
		한정하며, 설탕이나 그 밖의 감			
		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			
		없다)			
0408	1	알의 노른자위			
0408	11	건조한 것	닭[갈루스 도메스티	0	
			쿠스(Gallus domes		
			ticus)종으로 한정		
			한다]의 것		
0408	19	기타	닭[갈루스 도메스티	0	5,000톤
			쿠스(Gallus domes		,
			ticus)종으로 한정		
			한다]의 것으로 액		
			체 또는 냉동한 상		
			태의 것		
0408	9	기타			
0408	91	건조한 것	닭[갈루스 도메스티	0	
			쿠스(Gallus domes		
			ticus)종으로 한정		
			한다]의 것		
0408	99	기타			

3502		1. 닭[갈루스 도메스티쿠스 (Gallus domesticus)종으로 한정한다]의 것 알부민(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유장단백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)・알부민산염과그 밖의 알부민 유도체		0	
3502	1	알의 흰자위(egg albumin)	시코 이크 이지 키	0	
3502	11	건조한 것	식품 원료용의 것	0	
3502	19	기타	식품 원료용으로 액체 또는 냉동한 상태의 것	0	
0714		매니옥(manioc)·칡뿌리·살렙 (salep)·돼지감자(Jerusalem artichoke)·고구마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분이나 이눌린 (inulin)을 다량 함유한 뿌리·괴경(塊莖)[얇게 썬 것이나 펠릿(pellet)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, 냉장한 것・냉동한 것,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], 사고야자(sago)의 심 (pith)			
0714	10	매니옥(manioc)[카사바(cassava)] 2. 건조한 것			
		가. 칩(chip)	주정용	0	53,000톤

0901		커피(볶았는지, 카페인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),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,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(커피의 포함비율 은 상관없다)			
0901	1	커피(볶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)			
0901	11	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	0		
0901	12	카페인을 제거한 것	0	수입	전량
1512		해바라기씨유·잇꽃유·목화씨 유와 그 분획물(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)			
1512	1	해바라기씨유·잇꽃유와 그 분 획물			
1512	11	조유(粗油)			
		1. 해바라기씨유	0		
1512	19	기타		수입	전량
		1. 정제유(精製油)			
		가. 해바라기씨유	0		
1701		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,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(蔗糖) (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 다)			

1		1		
1701	1	조당(粗糖)[향미제(香味劑)나 착색제가 첨가되지 않은 것으 로 한정한다]		
1701	12	사탕무당		
		1. 편광도수가 98.5도 이하인 것	0	
		2. 편광도수가 98.5도를 초과 하는 것	0	
1701	13	이 류의 소호주 제2호에 규정된 사탕수수당	0	수입 전량
1701	14	그 밖의 사탕수수당		
		1. 편광도수가 98.5도 이하인 것	0	
		2. 편광도수가 98.5도를 초과 하는 것	0	
1701	9	기타		
1701	91	향미제(香味劑)나 착색제가 첨 가된 것	0	50,000톤
1701	99	기타	0	
2008		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·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 분(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 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)		

2008	1 11	견과류 · 땅콩과 그 밖의 씨류(서로 혼합된 것인지에 상관 없다) 땅콩	피넛 버터를 제외	10	10,000 등
2008	11	-8-6	하며, 가공용으로 한정한다	10	10,000톤
2207		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(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), 변성 에틸알코올과 그 밖의 변성 주정(알코올의 용량은상관없다)			
2207	10	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(알 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 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) 1. 조주정(粗酒精)		0	86,000 킬로리터
2306		오일 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 태인 유박[잘게 부순 것인지 또 는 펠릿(pellet) 모양인지에 상 관없으며 제2304호나 제2305호 의 것은 제외한 식물성·미생 물성 지방이나 기름을 추출할 때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]			
2306	60	팜 너트(palm nut)나 핵(核)에 서 나온 것	사료용	0	25,000톤
2709	00	석유와 역청유(瀝靑油)(원유로			

 1. 석유				
1.				
가. 섭씨 15도에서	비중이			
0.796 초과 0.841 것	이하인			
나. 섭씨 15도에서	비중이	다음 각 호의 어		
0.841 초과 0.847 것	이하인	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		
	.17.1			100 000 00
다. 섭씨 15도에서		1. 나프타 제조	0	100,000,00
0.847 초과 0.855 것	이하인	에 사용되는 원유		배럴
라. 섭씨 15도에서	비중이	2. 프로판 및 부	0	20,000,000
0.855 초과 0.869	이하인	탄 제조에 사		배럴
것		용되는 원유		
마. 섭씨 15도에서	비중이			
0.869 초과 0.885 것	이하인			
바. 섭씨 15도에서	비중이			
0.885 초과 0.899 것	이하인			
사. 섭씨 15도에서	비중이			
0.899 초과 0.904 것	이하인			
아. 섭씨 15도에서	비중이			
0.904 초과 0.966	이하인			
것				
 자. 기타				

		2. 역청유(瀝靑油)		
2711		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 의 탄화수소		
2711	1	액화한 것		
2711	11	천연가스	0	
2711	2	가스 상태인 것		수입 전량
2711	21	천연가스	0	
2711		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 의 탄화수소		
2711	1	액화한 것		
2711	12	프로판	0	
2711	13	부탄	0	수입 전량
3105		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(비료 의 필수요소인 질소·인·칼륨 중 두 가지나 세 가지를 함유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), 그 밖 의 비료, 이 류에 열거한 물품 을 태블릿(tablet) 모양이나 이 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 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 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 장한 것		
3105	30	오르토인산수소 이암모늄(인산 이암모늄)	0	수입 전량

Í				